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은 CFTC 규정 40.1(i)의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발행하며, 따라서 구속력 있는 규칙이 됩니다. 이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이하 "MRAN")은 MRAN의 공식 버전인 영문 텍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문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번역으로 인한 차이는 일체 구속력을 갖거나 법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번역본에 기재된 정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문본을 참조하십시오.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이 MRAN 내의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작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시 CME Group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MRAN에 모든 정보가 빠짐 없이 수록된 것은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CME Group은 MRAN에 수록된 정보 또는 MRAN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파실 여부에 상관 없이) 지지 않습니다.

이 MRAN의 내용은 다만 일반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CME Group이 편집한 것이므로 투자, 금융, 법률 또는 규제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보에 의존하기 전에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CME Group이 제공하는 이 문서에 포함된 자료, 정보 및 진술은 유가증권, 선물 계약, 구조화 상품, 규제 대상 투자 계약 또는 기타 일체의 투자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제안 또는 권유가 아니며, 여기에 포함된 그 어떤 사항도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한 개인의 계약이나 약속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관련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MRAN은 금융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금융 자문을 제공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생성하거나, 예금을 활성화하거나 예치하거나, 그 밖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이나 청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MRAN에서 설명하는 모든 예는 설명을 위한 예시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서 CME Group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MRAN과 그 정보는 (예측 및 그 안에 포함된 향후 전망 진술 포함) CME Group이 작성하였으며 고문이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성상,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추측, 위험 및 불확실성의 대상이 됩니다. 향후 전망 보고서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MRAN에 수록된 향후 예측에 관한 진술은 해당 진술이 언급된 날짜에만 해당되며, CME Group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본 MRAN에서 논의된 모든 상품 및 상품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집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CME Group에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에 수록된 규칙 및 명세에 관한 모든 사안은 CME, CBOT, NYMEX 및 COMEX의 공식 규정집(rulebooks)에 따라 언급된 것입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현행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CME Group은 본 MRAN에 포함된 일체의 자료나 정보가 모든 관할권 또는 국가에서 사용되거나 허용된다고 진술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이나 배포가 일체의 관련 법규와 상반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공지문은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본 공지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따르는 위험은 관련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항상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CME Inc., CBOT, NYMEX가 각각 공인 시장 운영자로 규제되고 CME Inc.는 증권 및 선물법(제 289 장)(("SFA"))에 따라 공인 청산소로 규제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ME Group 중 SFA에 따라 규제 활동을 수행하거나 싱가포르의 금융 자문법(제 110 장)에 따라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의 어떤 규제 당국도 본 공지문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공지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공지문의 내용에 대해 조급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독립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ME Group은 홍콩 증권선물 조례에 따라 선물계약을 거래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CME Group, Globe Logo, CME, Globex, E-Mini, CME Direct, CME DataMine,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 시카고 시무역위원회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상표입니다. NYMEX와 ClearPort는 뉴욕 상업거래소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상품거래소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이를 상표는 이러한 상표를 소유하는 당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수정, 복제, 저작, 전송, 복사, 배포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도 허가, 양도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

거래소	<b>CME, CBOT, NYMEX, COMEX</b>
주제	<b>대량매매 (Block Trades)</b>
참조 규정	<b>규정 526</b>
권고일	<b>2025년 7월 11일</b>
권고 번호	<b>CME Group RA2501-5</b>
발효일	<b>2025년 7월 25일</b>

관련 CFTC 규정 검토 기간을 조건부로 본 권고 공지문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거래일 부로 발효되며, 2024년 6월 17일 공고된 CME Group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 RA2402-5를 대체합니다. 본 권고 공지문은 CME Group 거래소 상품과 비 CME Group 거래소 상품을 포함하는 대량매매 전략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규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본 권고 공지문은 섹션 5, 섹션 7, Q&A 3 및 Q&A 6을 수정하여 그러한 전략의 체결 시간 및 가격 요건을 다룹니다.

본 권고 공지문에는 다음의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정의](#)
2. [참여](#)
3. [공통의 실소유주 계좌 간 거래](#)
4. [적격 상품](#)
5. [시간 및 가격](#)
6. [최소 수량](#)
7. [대량매매 주문 제출](#)
8. [기록 보관](#)
9. [오류 수정](#)
10. [대량매매 정보의 배포](#)
11. [비공개 정보의 사용](#)
12. [TAS,TAM, 및 TMAC 대량매매](#)
13. [지수 종가 베이시스 거래 \(BTIC\) 및 현물 개장가 베이시스 거래 \(TACO\) 대량매매](#)
14. [파생 대량매매 \(Derived Block Trades\)](#)
15. [규정 526 본문](#)
16. [연락처](#)
17.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대량매매는 규정 526과 본 권고 공지문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나 본 권고 공지문에 명시된 요건 및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대량매매의 정의

대량매매는 개별적으로 양자 간에 협상하는 선물, 옵션 또는 그 조합의 거래로 특정 수량 한도를 총족하는, 공개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도록 허용된 거래입니다.

매수, 매도 주문의 전산 매칭이나 수락을 허용하고 복수의 참가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설비에서 거래소 거래 상품의 대량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매매 호가를 단수 혹은 복수의 참가자들에게 쌍방으로 요청하고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대량매매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대량매매 제안 정보를 전산으로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에게 게시할 수 있도록 제 3 자가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산적으로 게시된 대량매매 제안을 기반으로 하여 체결되는 거래는 브로커를 포함하여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양방간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장참가자는 대량매매의 개별 협상 및 체결을 위해 CME Direct 내에 지정 호가 요청(Directed Request for Quote, "DFRQ")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흐름(workflow) 및 사용자 권한 관련 요건 등을 포함한 DRFQ 기능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cmegroup.com/drftq](http://www.cmegroup.com/drft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FQ 절차를 기술한 짧은 비디오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FQ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PlatformSolutions@cmegroup.com](mailto:PlatformSolutions@cmegroup.com)으로 문의하십시오.

## **2. 대량매매 참여**

대량매매의 각 당사자는 반드시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섹션 1a(18)항에 정의된 Eligible Contract Participant ("적격 계약 참가자")여야 합니다. 적격 계약 참가자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소 회원, 회원사, 브로커/딜러, 정부 기관, 연금기금, 상품집합투자기구(commodity pools), 기업, 투자회사, 보험회사, 예금기관 및 고액 개인 자산가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된 혹은 등록을 면제받은 상품 거래 자문사(CTA), 투자 자문사(investment advisors) 및 그러한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외국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외국인은 총 운용 자산이 미화 2 천 5 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해당 대량매매가 자사 고객에게 적합함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량매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주문을 대량매매로 실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 주문을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3. 공통의 실소유주가 보유한 서로 다른 계좌 간의 대량매매**

공통의 실소유주가 보유한 서로 다른 계좌 간의 대량매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대량매매를 실행하려는 각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내려지고, 2) 각 당사자가 대량매매를 실행할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진실된 사업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3) 해당 대량매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실행되는 경우. 전술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규정 534 ("가장매매(Wash Trade) 금지")에 의해 금지된 불법적인 가장매매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실질주주 계좌"는 동일한 실소유의 계좌 뿐 아니라, 동일한 실소유주의 지분이 100% 미만인 계좌까지 포함됩니다.

## **4. 대량매매 적격 상품**

대량매매 적격 상품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CME, CBOT, NYMEX, COMEX 의 대량매매 적격 상품 및 최소 한도 수량**

대량매매 최소 한도 수량 및 변경 사항은 Research & Product Development 오오 (연구 · 상품 개발) 부서가 발행하는 Special Executive Report를 통해 시장에 통지됩니다. 관심 있는 시장 참가자들은 CME Group 구독 센터를 방문하여 이메일을 통해 관련된 보고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http://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subscriptions/advisory-subscribe.html>

## **5. 대량매매 거래 시간 및 가격**

대량매매는 공개 매매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량매매는 기초 선물이나 선물계약 옵션이 만료된 이후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대량매매는 (i) 거래 규모, (ii) 해당 기간에 거래된 동일한 계약에 대한 다른 거래의 가격 및 규모, (iii) 해당 기간에 기초 현물 시장이나 관련 선물 시장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른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및 규모, 그리고 (iv) 시장이나 대량매매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은 반드시 해당 시장의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각 개별(Outright)거래 및 규정 542 (“동시(Simultaneous) 스프레드 및 컴비네이션 거래”)가 적용되는 대량매매 적격 스프레드 혹은 조합(combination) 거래의 각 구간(leg)은 반드시 단일 가격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CME Group 거래소 상품과 비 CME Group 거래소 상품을 포함하는 대량매매 전략의 경우 해당 CME Group 거래소에서의 개별(outright) 거래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절한 가격 단위 여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CME Group 거래소 상품의 개별 거래로서 검토될 것입니다.

대량매매 가격은 조건부 주문 (예, 지정가 주문)의 성립을 유발하거나 달리 일반 시장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개별(Outright), 스프레드 및 조합의 대량매매 최소 한도 수량**

개별 선물 및 옵션 거래의 대량매매 최소 수량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 **CME, CBOT, NYMEX, COMEX 의 대량매매 적격 상품 및 최소 한도 수량**

적격 CTA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량매매 주문을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고 규제 책임자(Chief Regulatory Officer)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상황상 요구되고 그러한 예외적 적용이 거래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대량매매 최소수량 요건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포트폴리오 포지션 청산 시 합산 거래.aggregate transaction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구간(leg)이 각 상품에 해당하는 대량매매 최소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량매매로 거래되는 스프레드와 조합 주문에 대한 최소 수량 요건에 관련된 정보 또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대량매매 제출**

CME, CBOT, NYMEX 및 COMEX 상품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CME Direct 나 CME ClearPort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a) 제출 시한**

대량매매가 체결되면, [상품에 따라](#) 5분 또는 15분 이내에 CME Direct 나 CME ClearPort를 통해 본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CME Direct 나 CME ClearPort를 통해 제출되면 해당 거래의 양 당사자가 신용 확인을 통과하고 양측 거래의 관련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시장에 가격이 보고되고 CME Clearing에 제출됩니다.

대량매매의 체결 시간은 거래가 완료된 시점, 즉 당사자들이 거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스프레드 대량매매의 경우 각 구간의 가격이 결정된 시점이 아닌 각

구간의 차이 또는 조합 가격(**differential or combination price**)에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 시점이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반드시 대량매매 체결 시간을 정확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체결 시간을 신고할 경우 징계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CME Group 거래소 상품 및 비 CME Group 거래소 상품을 포함하는 전략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거래를 제출하기 위해 특정 스프레드 및 조합(combination) 거래의 개별 구간의 가격에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대량매매에 합의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별 구간의 가격에 합의해야 합니다.

대량매매 가격은 정규 시장의 거래 가격과는 분리하여 보고되며, 일일 거래 가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CME, CBOT, NYMEX 및 COMEX 대량매매 적격 상품 및 보고 요건

##### b) 추가 제출 요건 및 의무

2017년 7월 17일 이후, 모든 대량매매는 CME Direct, CME ClearPort User Interface(UI), 또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제3자 소프트웨어를 거쳐 CME ClearPort API를 통해 CME Clearing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CME Direct는 CME ClearPort API에 연결됩니다.

대량매매 가격을 시장에 보고하고 CME 청산소에 제출하기 위해 거래 양측 당사자 모두 반드시 신용 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양측의 거래 조건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두 당사자 중 하나라도 필요한 신용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일치되지 않으면 해당 대량매매 가격은 시장에 보고되지 않으며, 해당 대량매매 거래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각 거래 당사자가 직접 CME Direct나 CME ClearPort에 입력(일방 보고)하거나 브로커 또는 다른 승인된 대리인(양방 보고)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방 보고의 경우, 대량매매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서로를 거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각자 방향의 대량매매 주문을 개별적으로 CME Direct나 CME ClearPort에 입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반드시 각자의 거래 내역을 규정된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 보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매수자 또는 매도자)이 자신의 방향에서 거래를 입력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당사자는 수락 요청된 거래가 반드시 지정된 시간 안에 (본인의 계좌 정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락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방향의 거래를 먼저 입력하는 당사자는 본인이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지정된 시간 안에 수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브로커나 기타 대리인이 매수, 매도 양방의 대량매매 거래를 입력하는 양방 보고시에는 해당 브로커나 기타 대리인이 대량매매 주문을 제한 시간 이내에 입력할 책임을 지닙니다.

#### CME 및 CBOT 상품의 대량매매

대량매매는 CME Direct 혹은 CME ClearPort에 일요일 오후 5시부터 금요일 오후 5:45분 (중부표준시 기준)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ME Direct 및 CME ClearPort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45분부터 오후 6시(중부표준시 기준) 사이의 점검 시간(maintenance window) 동안에는 CME 및 CBOT 대량매매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량매매가 허용되지 않은 시간 중이나 바로 직전에 협상을 마친 CME와 CBOT 대량매매는 5분 신고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오후 6:05분(중부표준시 기준)까지 제출해야 하며, 15분 보고 시한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오후 6:15분(중부표준시 기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NYMEX 및 COMEX 상품의 대량매매

대량매매는 각 영업일의 오후 5:00 중부표준시(CT)/6:00 동부표준시(ET) 부터 오후 4:00 CT/5:00 ET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ME Direct 및 CME ClearPort 는 각 영업일의 오후 4:00 CT/5:00 ET 부터 오후 5:00 CT/6:00 ET 및 주말에는 NYMEX 및 CBOT 대량매매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량매매 입력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 및 바로 직전에 협상을 마친 NYMEX 와 COMEX 대량매매는 5 분 신고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오후 5:05 CT/6:05 ET 까지 제출해야 하며, 15 분 보고 시한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오후 5:15 CT/6:15 ET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ME Direct 나 CME ClearPort 가 운영되지 않는 그외의 시간에 협상을 마친 대량매매는 반드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보고 시한에 따라 CME Direct 나 CME ClearPort 운영이 재개되는 시점으로부터 5 분이나 15 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량매매는 [FacDesk@cme.com](mailto:FacDesk@cme.com) 에 이메일 전송을 통해 CME ClearPort Facilitation Desk/Global Command Center 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Facilitation Desk** 가 해당 거래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CME Account Manager** 에 해당 거래 상대방의 신용 한도가 등록되어 있고 상품 승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Facilitation Desk 는 금요일 오후 4:30 CT/오후 5:30 ET 에서 일요일 오후 5:00 CT/오후 6:00 ET 사이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c) 대량매매 보고 시 필수 정보

대량매매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선물 계약, 계약연월,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가와 표준 옵션의 콜 · 풋 구분은 물론, 만기일 및 플렉스(FLEX) 옵션의 행사 스타일,
- 거래 수량, 또는 스프레드와 조합의 경우에는 각 거래 구간의 수량,
- 거래 가격, 또는 특정 스프레드와 조합의 경우에는 각 거래 구간의 가격,
- 거래 양측의 계좌번호,
- 매수자 및 매도자의 청산 회사,
- 거래를 신고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로 대량매매를 보고하는 경우),
- 이메일로 보고하는 대량매매의 경우, 거래 확인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그리고
- 거래 체결 시간(중부/동부표준시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분 단위까지). 체결 시간은 해당 거래가 완료된 시간입니다.

대량매매 적격 옵션의 대량매매는 옵션 계약이 미결제 옵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옵션 계약이 만료되는 날(만료일 포함)까지 대량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청산 목적의 대량매매를 CME ClearPort 의 정비 시간(maintenance window) 개시 시점이전에 CME Direct 또는 CME ClearPort 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대량매매 보고서를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고 의무를 지닌 당사자는 징계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보고 당사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요인에서 비롯되는 대량매매 보고 위반으로 제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대량매매가 CME ClearPort 의 자동 신용 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제출 지연이나 변경의 이유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Firm Regulatory Portal](#)의 “개별 협상 거래 (대량매매/관련 포지션 교환) 변경 또는 지연 (Privately Negotiated Transaction (Blocks/EFRPs) Changes or Delays)” 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8. 대량매매 기록 보관**

규정 536과 CFTC 규정에 따라 대량매매에 관련한 완전한 주문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대량매매의 체결 시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 **9. 오류 수정**

### **양방 입력 (Dual-Sided Entry)**

브로커나 기타 대리인이 양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여 매수, 매도 양방의 대량매매 주문을 입력하고 해당 거래가 청산되었으나, 해당 브로커나 기타 대리인이 거래 조건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오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가 거래를 제출한 날과 동일한 CME Direct 혹은 CME ClearPort 거래일에 발견되면 해당 브로커나 기타 대리인은 해당 잘못된 제출 건을 무효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대량매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가 거래를 제출한 날 이후의 CME Direct 혹은 CME ClearPort 거래일 이후에 발견되면 해당 브로커나 다른 대리인은 본 거래소에 해당 오류를 3 영업일 이내에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방 입력 (Single-Sided Entry)**

일방 입력을 통해 주문을 입력하고 해당 거래가 청산되었으나 거래 조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거래소에 해당 오류를 3 영업일 이내에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거래소에 제출하는 모든 거래 수정 요청에는 대량매매의 거래 상대방들이 수정 요청에 동의한다는 증빙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정 요청은 본 거래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하려면 +1 800 438 8616 (미국), +44 20 7623 4747 (유럽), +65 6532 5010 (아시아)에 전화하거나 [FacDesk@cme.com](mailto:FacDesk@cme.com)에 이메일을 전송하여 CME ClearPort Facilitation Desk/Global Command Center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3 영업일의 오류 수정 기간을 지나 접수된 오류 수정 요청은 CME 청산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CME 청산소 서비스 312.207.252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0. 대량매매 정보의 배포**

대량매매의 날짜, 체결 시간, 계약월, 가격 및 수량은 청산 즉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대량매매 정보는 MerQuote 시스템에 보고되며 코드 “BLK”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량매매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CME Group 웹사이트에도 표시됩니다: <http://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blocktrades.html>. 대량매매 정보는 트레이딩 플로어에도 게시됩니다.

대량매매 가격은 정규 시장의 거래와 분리하여 게시됩니다.

대량매매 거래량은 본 거래소가 게시하는 거래량 보고서에도 별도로 표시됩니다.

## **11. 대량매매 관련 비공개 정보의 사용**

### **a) 일반**

대량매매의 제안이나 협상에 개입한 당사자는 대량매매 체결 촉진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의 세부 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완료된 대량매매에 관한 비공개 정보의 공유가 허용된 당사자들은 본 거래소가 해당 대량매매를 공시하기 전에는 그러한 정보를 일체의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고객 신원 공개는 아래 섹션 b)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양방향의 대량매매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당사자의 경우, 협상의 맥락에서 특정 방향의 시장의 관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정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b) 브로커의 고객 신원 공개

특정 고객을 대신하여 대량매매를 협상하는 브로커는 해당 고객의 명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대량매매를 체결할 해당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고객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서면으로 (문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세지 등) 또는 녹음되는 전화 상으로 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동의의 증빙은 요청 시 시장규제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적 동의는 거래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회사 내에서 신원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로커가 명시적 동의를 각 거래별로 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브로커는 최소 연간 기준으로 이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확인에 대해서는 부정의 동의(negative consent)가 허용됩니다. 브로커는 연간 재확인을 증명할 문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요청 시 시장규제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하에 브로커는 대량매매 체결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대량매매 협상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한해서만 고객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c) 사전 해징(Pre-Hedging)/대비적 해징(Anticipatory Hedging)

잠재적 대량매매의 당사자들은 해당 대량매매의 체결에서 비롯될 것으로 진실되게 믿는 포지션에 대해 사전 해징이나 대비적 해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 고객 주문의 반대편을 취하는 중개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중개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계좌, 소유권을 보유한 계좌, 또는 중개자의 고용자의 자기 매매계좌에서 대량매매 체결 이전에 대량매매로 인해 형성될 것으로 그들이 예상하는 포지션을 상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당 중개기관은 대량매매 거래가 체결된 후에만 해당 포지션을 상쇄하는 거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해징을 하는 당사자가 자기매매로 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규제부는 기준의 고지 내용(disclosures)을 포함하여 대량매매의 협상 및 체결과 관련한 의사소통 전체를 고려할 것입니다. 대량매매 거래 협상에 자기 매매로 임하는 당사자가 사전 해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자기매매에 의해 거래하며,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인의 의무(agency duties)를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어떠한 당사자의 인스턴트 메신저 커뮤니케이션의 머리말(header)/꼬리말(footer)에 그 당사자가 자기 매매로 거래하며 거래상대방에게 대리인의 의무를 지지 않음을 알리는 고지(disclosure)를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매매자가 사전 해징에 가담하기 전에 대량매매 협상과 동시에 행해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매매 협상 자체가 상대방에게 대리인의 의무(agency duties)가 있음을 시사하거나, 암시하거나,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약관 또는 기타 다른 비동시 의사소통에 있어 이루어진 고지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추론은 시장규제부에 의해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사전 해징이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사기, 기만 또는 기준의 의무를 위반하여 습득된 정보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음이 분명한 때에 중요한 미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행매매(front running)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 532의 위반입니다.

본 거래소는 사전 해정의 실제 및 정황이 거래에 개입된 당사자의 행위가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중개기관이 고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지침은 오로지 대량매매에 대비한 사전 해정의 맥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CEA 나 CFTC 규정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2. TAS, TAM, 및 TMAC 대량매매**

특정 대량매매 적격 선물 계약월은 대량매매로 체결하고 당일의 정산가나 정산가보다 10 틱 이내로 높거나 낮은 유효한 호가 단위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AS 대량매매"). 특정 대량매매 적격 선물 계약월은 대량매매로 체결하고 당일의 기준가 혹은 기준가보다 10 틱 높거나 낮은 일체의 유효한 호가 단위에 준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AM 대량매매"). 특정 대량 매매 적격 선물 계약월은 대량매매로 체결하고 당일 지정가 또는 지정가보다 4 틱 높거나 낮은 유효한 호가 단위에 준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MAC 대량 매매").

추가로 기초 스프레드가 TAS 나 TAM 거래 적격 스프레드인 경우, 동종 상품 간 캘린더 스프레드를 TAS 또는 TAM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TAS 및 TAM 가격의 적용이 허용되는 상품, 계약월 및 스프레드의 목록은 TAS 및 TAM 거래 관한 최신 규정 권고 공지문을 참고하십시오.

적격 TAS 캘린더 스프레드의 대량매매를 포함하여 TAS 대량매매는 만기가 도래한 계약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TAS, TAM, 및 TMAC 대량매매가 허용되는 상품과 계약월은 다음 링크를 통해 CME Group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대량매매 적격 상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량매매 적격 상품 및 최소 수량 요건

## **13. 지수 종가 베이시스 거래("BTIC") 및 현물 개장가 베이시스 거래("TACO")의 대량매매**

BTIC 거래는 해당 현물지수의 종가 수준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래소 선물 거래입니다. 주요 상장 시장의 예정된 폐장일 혹은 이전의 지정된 거래일에 실행된 BTIC 대량매매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선물 가격은 당일 거래일의 지수 종가를 참고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BTIC 대량매매의 경우 만기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TACO 거래는 해당 선물 계약의 기초 현물 지수의 다음 정기 특별 개장 호가 ("SOQ")를 참조하여 가격을 책정한 거래소 선물 거래입니다.

BTIC 대량매매 적격 상품과 대량매매 최소 한도의 목록은 다음 링크를 통해 CME Group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BTIC 대량매매 표

BTIC 대량매매에 책정되는 선물 가격은 해당되는 날 당일의 현물 지수 종가수준에서 그보다 높거나 낮은 최소 호가 단위로 조정한 ("베이시스") 가격이 될 것입니다.

TACO 대량매매에 책정되는 선물 가격은 해당 현물지수의 다음 정기 특별 개장 호가 ("SOQ")에서 SOQ 보다 높거나 낮은 일체의 최소 호가 단위로 조정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BTIC 와 TACO 거래에 적용되는 베이시스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장(chapter)에 지정된 완전한 틱 단위로 명시되어야 하며, 조달 금리, 예상 배당 수익 및 해당 선물 계약의 잔여 만료 기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BTIC 대량매매의 선물 가격은 본 거래소가 오후 3:45 분 (중부 표준시)에 결정하며, 본 거래소가 결정한 가격은 그 시점에 최종적입니다. 증권의 주요 상장시장에 조기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BTIC 대량매매의 선물 가격은 주요 상장시장의 조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45 분 후에 본 거래소가 결정하며 본 거래소가 결정한 가격은 그 시점에 최종적입니다. 증권의 주요 상장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일의 BTIC 대량매매는 모두 취소됩니다.

TACO 대량매매의 선물 가격은 Standard & Poor's가 SOQ를 공포한 직후 본 거래소가 결정할 것입니다. 특정 현물 지수의 주요 상장 거래소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러한 현물 지수 관리자가 예정된 정기 SOQ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SOQ에 의하는 모든 TACO 대량매매는 취소될 것입니다.

대량매매 가능 종목 목록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BTIC 와 TACO 대량매매는 스프레드 거래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량매매 스프레드 거래를 실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를 별도의 개별 (Outright) BTIC 또는 TACO 대량매매로 협상하여야 하며, 구간별 해당하는 대량매매 최소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 **14. 파생 대량매매 (Derived Block Trades)**

파생 대량매매(derived block trade)는 해당하는 특정 계약에 있어서 딜러가 고객과의 대량매매 거래를 체결하였으나 대량매매 거래 체결 후에 딜러가 행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지 거래에 따라 대량 매매의 가격 및 수량이 결정되는 거래입니다. 파생 대량매매는 [여기](#)에 표기된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그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의 대량 매매 최소 수량 요구가 적용됩니다.

파생 대량매매는 다른 상품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량 매매에 참가하는 거래당사자는 다음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 일반 요건

- 거래 당사자들이 파생 대량매매 (derived block trade)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거래 조건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이 반드시 규정 536.E 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해지 거래를 체결하기에 앞서 딜러와 고객은 대량매매를 완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해당하는 대량매매 최소 수량 요구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대량매매의 선물 계약 수량 또는 명목 금액 (notional value),
  - 딜러의 해지 거래(들) 실행 방식,
  - 딜러의 해지 거래(들)가 실행될 시장,
  - 해지 거래가 완료된 후에 대량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딜러가 사용할 사전에 결정된 베이시스 (basis)
- 해지 거래와 완료된 대량 매매는 당일 거래소 영업일 5:45 분 (CT 중부 표준시)까지 발생하고 거래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스프레드 거래는 파생 대량매매로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혜정 수단에는 주식巴斯켓,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 “ETFs”), 상장지수증권 (Exchange Traded Notes, “ETNs”)과 같은 기타 현물 시장 상품, 및/또는 주식 인덱스 선물 또는 선물옵션 계약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혜정 수단은 파생 대량매매 거래의 기초 자산인 주식 선물 상품과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정 거래에 허용되는 실행 방식에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VWAP"), 시간 가중 평균 가격 (time weighted average price, "TWAP"), 거래량 비율 (percentage of volume, "POV"), 지정가 (limit price), 또는 대량매매를 체결한 시점에 딜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한 해지 방식이 포함되며, CME Direct 를 통해 대량매매를 제출할 때에 실행 방식이 반드시 식별되어야 합니다.

딜러가 고객과 체결한 대량매매의 본래 합의된 수량에 필요한 해지 거래를 전량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딜러는 최소한 딜러가 체결한 해지 거래 수량에 상응하는 수량의 대량매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동의 하에 딜러는 본래 합의된 수량 전량까지 대량매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 수량이 대량매매 최소 수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딜러는 고객의 동의 하에 대량매매 최소 수량요건에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수량의 대량매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딜러는 대량매매 최소 수량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해지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매매가 완결될 수 없음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량 매매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딜러는 대량매매가 제출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규제부가 요청하는 경우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요건

- 파생 대량매매는 거래를 체결하는 딜러에 의해 CME Direct 를 통해 (양방 입력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가 발생한 당일 오후 5:45 CT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거래는 CME Direct 에서 파생 대량매매 체크박스를 선택함으로써 파생 대량매매로 정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 딜러는 CME Direct 에서 대량매매 제출 양식을 통해 거래를 제출할 때 해지 거래에 관한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지 타입 (VWAP, TWAP, POV, 지정가, 또는 기타),
  - 해지 거래에 대한 설명,
  - 해지 거래가 발생한 상품 (자유 양식 텍스트 상자),
  - 대량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베이시스 (인덱스 포인트로 표시)
- CME Direct 를 통해 제출하는 체결 시간은 딜러와 고객이 대량매매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은 해지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파생 대량매매는 CME Group 웹사이트 및 마켓 데이터를 통해 배포되는 가격 리포트에 고유하게 표기될 것입니다.

### 15. 규정 526 본문

#### **규정 526 대량매매**

본 거래소는 대량매매가 허용되는 상품을 지정하고 대량매매의 최소 한도 수량을 결정한다. 추가로, 스왑의 대량매매와 관련하여, 그러한 거래의 최소 한도 수량은 CFTC 규정 파트 43 부록 F 에 명시된 수준이나 그것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이 문장은 오로지 CBOT 규정에만 나타남]. 대량매매는 다음 내용에 의해 규제된다:

- A. 대량매매는 반드시 적용되는 최소 한도 수량과 동일하거나 한도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이어야 한다. 섹션 I 와 J 에 설명된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최소 거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여려 주문을 취합하여서는 안 된다.
- B. 대량매매의 각 당사자는 반드시 상품거래법(CEA) 섹션 1a(18)항에 정의된 Eligible Contract Participant ("적격 계약 참가자")여야 한다.
- C. 회원사는 고객이 해당 주문을 대량매매로 실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만 고객 주문을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다.
- D. 대량매매 체결가격은 (i) 거래 규모, (ii) 해당 기간에 거래된 동일한 계약의 다른 거래의 가격 및 규모, (iii) 해당 기간의 기초 현물 시장이나 관련 선물 시장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른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규모, (iv) 시장이나 대량매매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
- E. 대량매매는 조건부 주문 (예, 지정가 주문 및 MIT 주문)의 성립을 유발하거나 달리 일반 시장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F. 대량매매의 거래 주체 거래 상대방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매도자 혹은 중개기관이 개입된 거래의 경우 해당 대량매매를 처리하는 브로커는 반드시 각 대량매매를 본 거래소가 지정한 시한 이내에, 본 거래소가 지정한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계약, 계약월, 가격, 거래 수량, 각 당사자의 청산 회원, 체결 시간, 그리고

옵션의 경우, 행사가, 뜻·콜 구분 및 만기월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거래소는 제출된 정보를 정규 시장의 거래 보고서와 분리하여 신속하게 게시할 것이다.

- G. 대량매매는 반드시 승인된 보고 방법에 준하여 본 청산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H. 청산 회원 및 대량매매에 개입한 회원은 반드시 규정 536에 준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I.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받은 투자자문사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받은 상품거래자문사 ("CTA")는 그러한 자문사가 미화 2천 5백만 달러를 넘는 총운용자산을 보유 중이고 해당 대량매매가 그러한 자문사의 고객에게 적합한 경우, 섹션 A, B, C, D의 목적상 적용 대상 기관이 된다.
- J. 섹션 I에 설명한 CTA 혹은 투자자문사와 유사한 역할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하는 외국법에 규제되는 외국인이 2천 5백만 달러를 넘는 총운용자산을 보유 중이고 해당 대량매매가 고객에게 적합한 경우에는 섹션 A, B, C, D의 목적상 대상 기관이 된다.

## 16. 연락처 정보

본 권고 공지문에 관한 질문은 다음의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Minju Kang, Manager, Rules & Regulatory Outreach, +82 2 6297 0252

Urmila Graft, Director, Investigations, 312.341.7639

Cash Kinghorn, Manager, Investigations, 312.341.7632

Tiffany Riviere, Lead Investigator, Investigations, 930.2316

Penelope Beckhardt, Investigations Specialist, Investigations, 312.435.3664

Erin Middleton, Senior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41.3286

Trenton Crawford, Senior Specialist,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07.9006

본 권고 공지문과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312.930.3434 또는 [news@cme.com](mailto:news@cme.com)을 통해 CME Group의 기업홍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7. 자주 묻는 질문

**Q1: 두 적격 당사자들 간에 대량매매를 증개하기 위하여 브로커 또는 증개사가 ECP 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대량매매의 매도자 및 매수자만 규정 526.B 및 본 권고 공지문의 섹션 2 상의 관련된 지침에 명시된 참여 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량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그들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업권에서 필요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량매매에 동의하거나 거래 체결 이전에 CME Direct 및/또는 CME Clearport에 계좌 및 필요한 권한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Clearport에서 브로커로 등록되는 것은 업권에서 "브로커(증개사)"로 등록되는 것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learport 사용자 매뉴얼](#) 상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Q2: 대량매매를 통해 포지션을 이전(transfer)할 수 있나요?**

A2: 포지션 이전(transfer)은 규정 853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대량매매를 통해 포지션 이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거래의 실행이 규정 526 및 본 권고 공지문의 요건, 특히 거래의 양 방향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목적,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요구하는 섹션 3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 간에 단수 또는 복수의 대량매매를 실행하는 것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자전거래(wash trad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최소 가격 단위 이하의 가격에 대량매매를 실행할 수 있나요?**

A3: 아니오. 각 대량매매 거래는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협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브로커는 최소 가격 단위 이하의 가격에 주문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가격 단위에 각각 독립적으로

협상되고 체결된 둘 혹은 이상의 대량매매 거래가 최소 가격 단위 이하의 평균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는 규정의 위반이 아닙니다.

비 CME Group 상품을 포함하여 가격 차(differential)에 거래되는 대량매매 전략이 CME Group 구간에 해당하는 최소 가격 단위 이하의 대량매매 가격을 시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격 단위의 두 개의 대량매매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CME Group 구성 요소는 개별 상품에 해당하는 최소 수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균 가격은 한 가격 단위 차의 두 가격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체결 시간은 가격 차(differential)가 합의된 시간입니다. 당사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 요소의 가격을 결정하고 본 권고 공지문의 Q&A 14에 기술된 대로 교차 거래소 스프레드 표식(Cross Exchange Spread indicator)을 사용하여 거래를 식별해야 합니다.

**Q4:** 어떤 당사자가 대량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중개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전 혜정(pre-hedging)이 금지되나요?

A4: 만약 어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고용 회사가 대량매매 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 (brokerage or commission fee)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규제부는 상대방에게 대리인의 의무(agency duties)를 지는 것으로 추론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대량매매의 사전 혜정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사전 혜정을 하는 당사자의 고용 회사가 Give-up 수수료 또는 청산 수수료, 규제 비용, 대량매매 보고 비용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수수료가 대량매매가 중개되거나 중개의 도움을 받은 것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수수료 또는 비용의 청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장규제부는 대량매매의 협상 가격이 예를 들어 사전 혜정하는 당사자가 특정 대량매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의 에이전시 데스크와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인의 의무로 추정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수(commission)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Q5:** 대량매매 협상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상대방에게 중개인의 의무(agency duties)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장규제부가 고려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시장규제부는 기준의 고지 내용disclosures)을 포함하여 대량매매의 협상과 체결과 관련한 전체 의사소통을 고려할 것입니다. 어떠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신하여 주문에 착수(work an order)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리고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부터 중개인의 의무가 추론되어 사전 혜정은 금지됩니다. “주문에 착수”한다와 같이 보통의 매매 용어로 인한 상반되는 추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혜정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기록되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자기매매로 임하며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6:** 대량매매 거래의 체결 시간은 언제인가요?

A6: 대량매매는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거래에 동의하고 모든 중요한 거래 조건이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점에 체결됩니다. 개별(outright) 거래의 경우, 이는 특정 가격 또는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공표되는 가격 (예, 일일 정산가격) 및 거래 수량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합의에 중대한 조건들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스프레드 및 CME Group 상품 및 비 CME Group 거래소 상품을 포함하는 전략의 경우, 거래 체결 시간은 당사자들이 구간 간 가격 차(price differential)에 합의한 시점입니다.

예시 1: 미 중부표준시(CT) 오후 1시에 고객이 미 중부표준시 오후 9시에 공표되는 기초 인덱스에 +0.50 가격 차(differential)에 50 계약의 선물 계약을 매입하는 주문을 중개기관에 주었습니다. 미 중부표준시 오후 2시에 중개기관이 매도자를 찾았고, 양 당사자는 미 중부표준시 오후 9시에 기초

인덱스 가격이 공표되면 거래를 완료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미 중부표준시 오후 9시에 해당 인덱스 가격이 산출되었고 인덱스 가격은 600.0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거래를 완료하고 거래소의 개별 협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개기관은 거래의 최종 가격인 600.50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거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중부표준시 9시 10분에 양 당사자는 가격, 수량, 계약(시장), 그리고 거래의 다른 중요 조건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대량매매 거래 내역은 체결 시간, 즉 당사자들이 거래의 최종 가격에 합의한 시점(중부표준시 오후 9시 10분)에 유의하여 상품에 따라 5분 또는 15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시 2:** 미 중부표준시(CT) 오후 1시에 고객이 CME Group 선물 50 계약과 비 CME Group 선물 50 계약을 두 상품 간 22.5의 가격 차에 매수하는 주문을 중개기관에 접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그 가격 차를 달성하기 위한 가격에 CME Group 선물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기관에 가격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미 중부표준시(CT) 오후 1시 5분에 중개기관과 거래상대방이 22.5의 가격 차에 합의합니다. 이 때, 거래 체결 시간은 미 중부표준시(CT) 오후 1시 5분이며, 이 거래가 비 CME Group 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CME Group 대량매매는 본 권고공지문 Q&A 14에 기술된 대로 15분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Q7: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7:**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 사이에의 대량매매 거래의 맥락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는 독립적인 영업 목적(business purposes)과 보고 체계(reporting structures)를 가지고 각자 계좌를 운용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규정 534 (“자전거래(Wash Trades) 금지”)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적 자전거래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실소유는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 뿐 아니라 100% 이하의 공동 소유권을 가진 계좌로 정의됩니다.

**Q8: 시장참가자는 동시에 접수된 매수 및 매도 대량매매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8:** 계좌 담당자(account executives), 브로커, 또는 다른 중개인을 포함한 시장참가자는 동시에 매수 및 매도 주문 실행을 접수한 경우 주문의 적절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물어볼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을 수령하는 시장 참가자는 해당 주문의 실행이 자전거래 결과를 가져온다면 자전거래를 드거나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량매매 매수 · 매도 주문의 실행을 동시에 요청받는 시장 참가자들은 반드시 해당 주문들이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의 주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질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 및 매도 주문이 공동의 실소유주의 계좌 간 주문인 경우, 브로커는 반대 주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자에 의해 주문되었는지,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있는지(bona fide business purposes)를 포함하여 본 권고 공지문 및 규정 526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대량매매는 개별적으로 양자 간에 협상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실소유주간의 동시 매수 매도 주문을 접수한 시장참가자는 단순히 주문을 반대편 주문에 매칭하고 그 거래를 거래소에 대량매매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자를 통해서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개별적인 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참가자가 다른 당사자가 매수 및 매도 대량매매 주문의 당사자가 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각 매도, 매수 주문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어야 하며 다른 거래의 여하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나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것은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매수/매도 상대방에게 자전거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매개하는 시장참가자는 거래소 규정 432.X에 의거하여 조력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Q9: 대량매매 거래 정보는 언제 공개된 정보로 간주되나요?**

A9: 대량매매 거래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대량 매매 거래 내역을 시장에 배포한 때에 공개된 정보(public information)로 간주됩니다. 당사자들은 거래소에의 대량매매 거래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확인된 거래 보고 즉시 이 정보가 시장에 배포되므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10:** 언제 시장참가자가 비공개 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정보에 근거하여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A10: 대량매매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당사자는 대량매매 주문 또는 잠재적으로 예정된 대량매매 주문의 가격 또는 시장의 방향이 공개된 경우 비공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 권고 공지문의 지침 및 규정 532에 의거하여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하거나 시장의 양방향 (two-sided markets)에 대해 가격 요청을 받은 경우는 비공개 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체결된 대량매매 거래의 당사자들 또한 거래소에 의해 대량매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비공개 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사자들이 대량매매가 완료되었으나 대량매매 거래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량매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섹션 11.c에 기술된 것처럼 대량매매에 자기매매로 임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대량매매의 체결에서 발생할 것으로 진실되게 믿는 포지션에 대해 사전 헤징이나 대비적 헤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1:** 체결 이후 대량매매 거래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1: 거래소에 제출되는 대량매매 거래의 가격은 당사자들 간에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그리고 기록,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추적 기록(audit trails)에 반영되어 있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대량매매 거래 내역의 보고에 있어서의 오류는 거래소 규정 808.H. 또는 본 권고 공지문의 오류 수정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12:** TAS 적격상품이 아닌 상품의 정산가에 대량매매를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12: 해당 상품이 TAS (Trading at Settlement, 정산가 거래)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소에 의해 정산가가 공표될 때까지 당사자들이 정산가에 대량매매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TAS에 적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정산가가 알려지기 이전에 정산가에 가격을 책정하는 대량매매에 대한 의향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정산가가 공표되면, 당사자들은 그 가격에 합의하고 대량매매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Q13:** 한 당사자가 델타 헤징 없이 옵션 대량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규정 526과 이 권고 공지문의 지침에 준수하여 어떻게 향후 옵션 대량매매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델타 리스크를 사전 헤지할 수 있나요?

A13: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 공급자가 사전 헤징 행위에 근거하여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까지 옵션 대량 매매의 중요한 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거나 합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당사자가 자기 매매로 거래에 임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유동성 공급자가 기초 선물 상품에서 달성을 수 있는 헤징에 따라 대량 매매의 합의 가격이 결정되는 대량매매에 대한 의사를 타진합니다. 요청을 받은 후, 유동성 공급자는 향후 옵션 대량매매의 체결 후 발생할 것으로 선의를 가지고 예상하는 포지션을 사전 헤징합니다. 그 후에 유동성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확정된 가격을 보여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래하기로 합의한다면 옵션 대량매매 거래는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상품에 해당하는 보고 시한 내에 거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과 유동성 공급자가 옵션 대량매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전 헤징은 여전히 선의를 가지고 충실히 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옵션 대량매매의 가격은 (i) 거래 규모, (ii) 해당 기간에 거래된 동일한 계약에 대한 다른 거래의 가격 및 규모, (iii) 해당 기간에 기초 현물 시장이나 관련 선물 시장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른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및 규모, 그리고 (iv) 시장이나 대량매매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합니다. 옵션 대량매매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장규제부는 유동성 공급자가 향후 옵션 대량매매의 체결로 발생할 것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사전 혜택하는 데에 필요했던 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4: 대량매매 전략이 CME Group 거래소 상품과 비 CME Group 거래소 상품에 대한 선물 및 선물옵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고 시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14: 거래소에의 대량매매 보고 요건의 적시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규제부는 해당 대량매매가 CME Group 거래소 상품과 비 CME Group 거래소 시장 상품을 포함한 전략의 일부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재출 시점에 CME Group 거래소 구간이 비 CME Group 거래소를 포함하는 전략의 일부임을 명시한다면, 거래 체결 후 15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되는 경우 대량매매 거래가 적시에 보고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Firm Regulatory Portal 상의 자기 보고(self-reporting) 메뉴를 통해, 또는 CME Direct 혹은 Clearport 상의 교차 거래소 스프레드 표식(indicator)을 통해 대량매매 거래가 비 CME Group 상품을 포함하는 대량매매 거래의 일부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검토함에 있어 시장규제부는 비 CME Group 거래소 대량매매 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